

대전지방법원 2024. 8. 27 선고 2024나202384(본소), 2024나202391(반소) 판결
[건물명도(인도)청구의 소 · 임대차보증금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4. 8. 27 선고 2024나202384(본소), 2024나202391(반소) 판결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1. 11 선고 2022가단103887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

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성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

B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호

변론종결 2024. 7. 16.

판결선고 2024. 8. 27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1. 11. 선고 2022가단103887(본소),
2023가단118039(반소) 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

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고만 한다)에게,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, 1,106,000원 및 2023. 10. 1.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3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나. 반소

원고는 피고에게 47,113,9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(피고는 이 법원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)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,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.

이 유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유현정, 판사 강애란, 판사 임수정